



성매매 없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

“딸들아, 우리 다시 꿈을 피워 내자”

미아리, 용주골, 청량리, 용산...
전국 곳곳에 풀잎처럼 흩어져
붉은 등 아래 시들고 있는 우리의 딸들아!

돌아갈 가정은 없었느냐,
친구를 잃었느냐,
너희가 무심코 떠났던 길은 한걸음,
이제 돌아보니 까마득히 천리나 되었느냐

더러는 돈이 없어 가고,
더러는 등 떼밀려 가고...
기차역 주변으로 갔느냐,
울며불며 섬으로 팔려 갔느냐

청소년가출, 성폭력, 성매매...
그저그저 남의 일,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들인줄만 알았더니
이제 보니 내 이웃,
당하고 보니 모두가 내 딸들이었구나.

울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너희는 그저 언 땅에 한철 묻힌 겨울 씨앗이다.
돌아올 봄을 기다리며 어서 희망을 지피우거라

엄마는 새싹 같은 너를 낳아 새근새근 젖을 물리고,
아빠는 등에 업고 동개동개 춤을 추었다.

그날을 기억하거라.
다시 태어남을 노래하거라.
아무도 너의 꿈을 막지는 못한다.
세상을 향해 두 주먹을 불끈 쥐거라.
하늘을 우러르거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2002년 현재 성매매 종사여성은 최소 33만명(여성개발원 51만명 추산), 지난 76년 보사부 발표(4만5천여 명)에 비해 7배가 증가했다. 유흥주점 등에서 검업으로 성매매하는 여성 24만명,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1만 명, 보도방 등을 통한 성매매 여성만도 8만여 명에 이른다. 성매매 알선업소만도 8만여 개로 추정된다.

온 나라가 성산업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 부끄럽지만 민주인권국가,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이다. 이미 우리의 삶 곳곳에 번식하고 있는 성산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인 성매매를 정상적인 성관계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성을 상품화하고 성적 착취와 학대, 인신매매까지 자행토록 함으로써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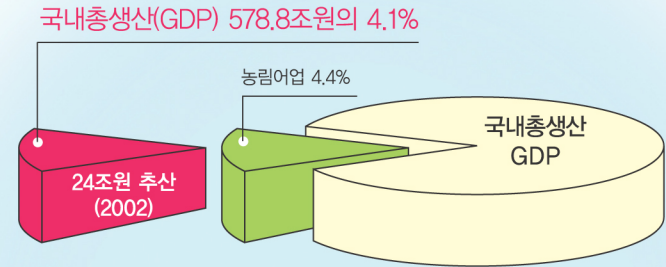
우리 법이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성매매가 더욱 확산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리판단이 미약한 청소년 등을 감언이설로 꼬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폭력을 동원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포주, 폭력배, 인신매매범 등 중간매개체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바로 우리의 성매매를 둘러싼 이런 구조적 사슬을 끊어 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여성만을 낙인찍었던 「윤락」대신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법적으로 자리 잡았고,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도입돼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도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비정상적으로 커져 버린 성산업의 근간을 허물어 내고 사회와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 대대적인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하지만 그 어떤 대책보다도 성매매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매매에 대한 관대한 생각과 인식부터 바뀌 나가야 할 것이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로 우리사회의 평등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주는 나침반이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여성인권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 성매매 경제(화대)규모



■ 성매매 여성 종사자수(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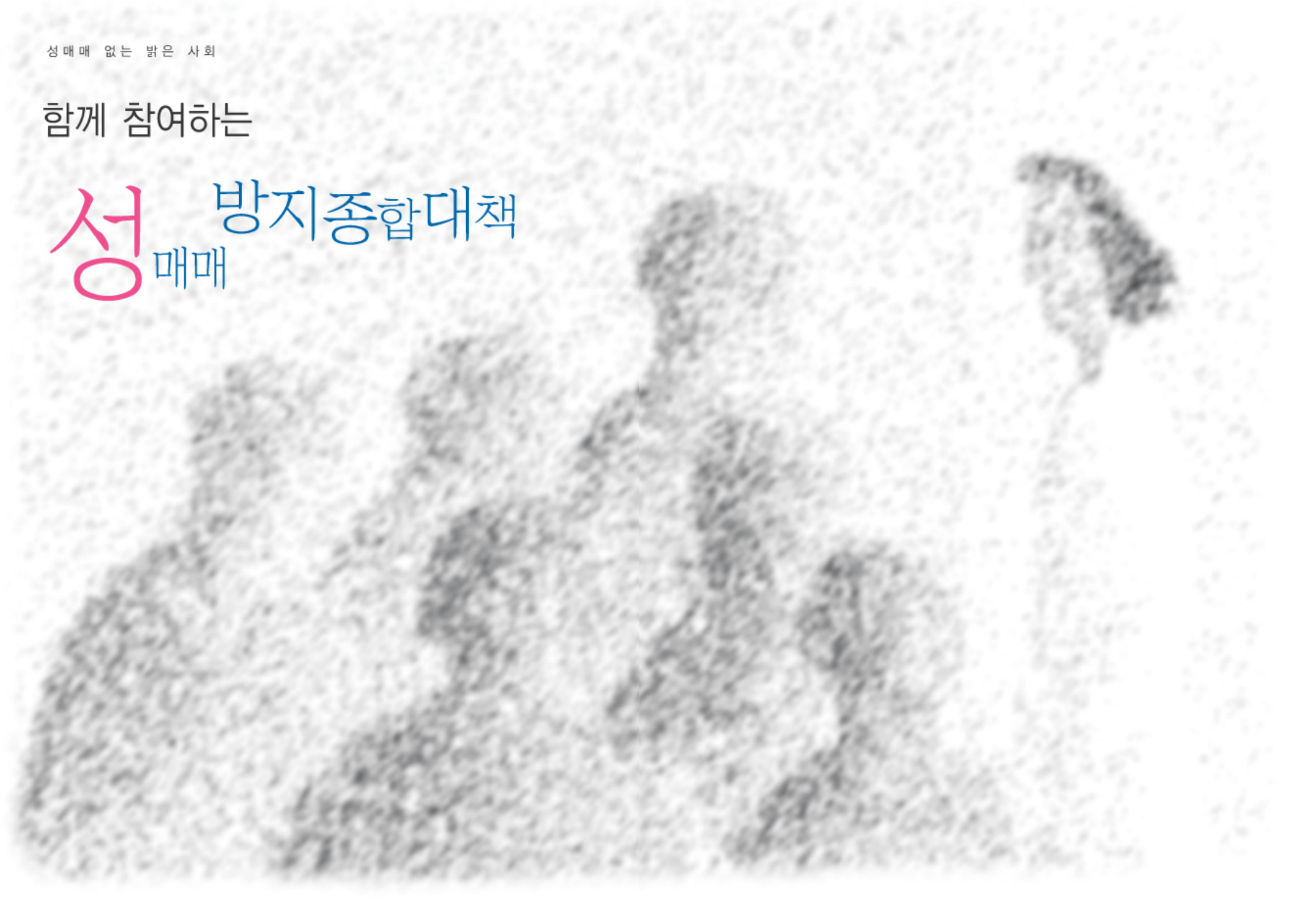
■ 업종별 성매매 알선비율(%)



성매매 없는 밝은 사회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방지종합대책



1 이제 성산업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 전액 몰수·추징

이번에 만들어진 성매매알선처벌법은 성매매가 소위 포주나 소개소 등 알선업자에 의해 확산되고, 성산업으로까지 변질되었음을 간파하고, 성매매 알선이나 인신매매로 번 검은 돈을 국가가 전액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매매 뒤에 숨어 있는 진실

성매매시장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 성을 파는 사람은 종사여성이 아니고 포주이며, 여성은 포주와 구매자 사이에서 팔리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여성들에게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지고 강요와 강압에 의해 성매매에 내몰리거나 심한 경우 감시와 구타 폭력 등 인권침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일명 사창가) 역사 속으로

성매매만 전업으로 이뤄지는 지역, 일명 사창가가 남아있는 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사문화 되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묵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등 성매매가 기승하는 환경부터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방지종합대책

정책목표

- 성매매 목적의 알선·인신매매 대폭 축소
-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자활 지원 강화

추진전략

1.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범정부적 추진체계 확립
3. 예방, 단속·처벌, 보호·지원 등 종합적 접근

의식개선

- 성매매알선처벌법 등 제정계기 의식 개선
- 성매매예방교육 강화

처벌·단속

-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의 단계적 폐쇄·정비
- 음란퇴폐업소 및 업주 강력처벌

보호지원

- 구조에서 자립에 이르는 전단계에 대한 국가 개입·지원
- 대상에 적합한 보호책 마련

선불금 불법 사슬 확실히 끊는다

1단계 - 상담센터, 긴급구조체계 확대

설사 성매매로 유입된 경위가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선불금 등을 이용한 위협, 감시, 강요 등의 행위가 있는 업주, 소개소, 사채업자간에 형성된 부당한 착취구조에 얽혀 자유롭게 이탈을 못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 적극적인 법적 보호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 현장 상담센터 및 보호시설을 확대
 - 유흥업소 밀집지역, 취약지역의 성매매 여성을 위한 현장 상담센터 및 보호시설을 확대해 탈성매매를 돕습니다.
 - 피해를 당한 여성은 경찰에 설치된 긴급지원센터로 신고하여 신속한 구조와 사건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현장활동가와 시설종사자 인력양성을 추진합니다.
- 긴급구조와 법률혜택 강화
 - 상담 및 긴급구조 활동이 강화되고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확대해 선불금 등 성매매 관련 채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2단계 - 자활직업훈련, 주거지원

성매매는 한번 유입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 사슬이 존재합니다. 성매매로부터 벗어난 경우에도 심리적·경제적 문제로 인해 사회에 적응이 힘듭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에 처한 탈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에 무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 나갈 것입니다.

- 직업훈련과 직업재활상담을 받도록 하고 창업이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줍니다.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도 확대 지원합니다.
- 그룹 홈 등을 통한 주거지원이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자활지원비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3 변종 성매매업소 발본색원

변태 유흥업소 '가면의 탈' 을 벗긴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 형태를 변형시킨 신종 음란퇴폐성 영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밀히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유흥업소 등의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특별·기획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인터넷·소형전단지·출장마사지 등 교묘한 수단과 방법 등을 유형별로 구분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 현장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갑니다.

성매매 연결고리부터 짚는다

성매매 주요 연결고리로 악용되고 있는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색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무등록 직업소개소 '보도방' 등은 이동전화(일명 대포전화)를 역추적하여 끝까지 찾아내고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곳은 범죄 집단의 자금을 끊어내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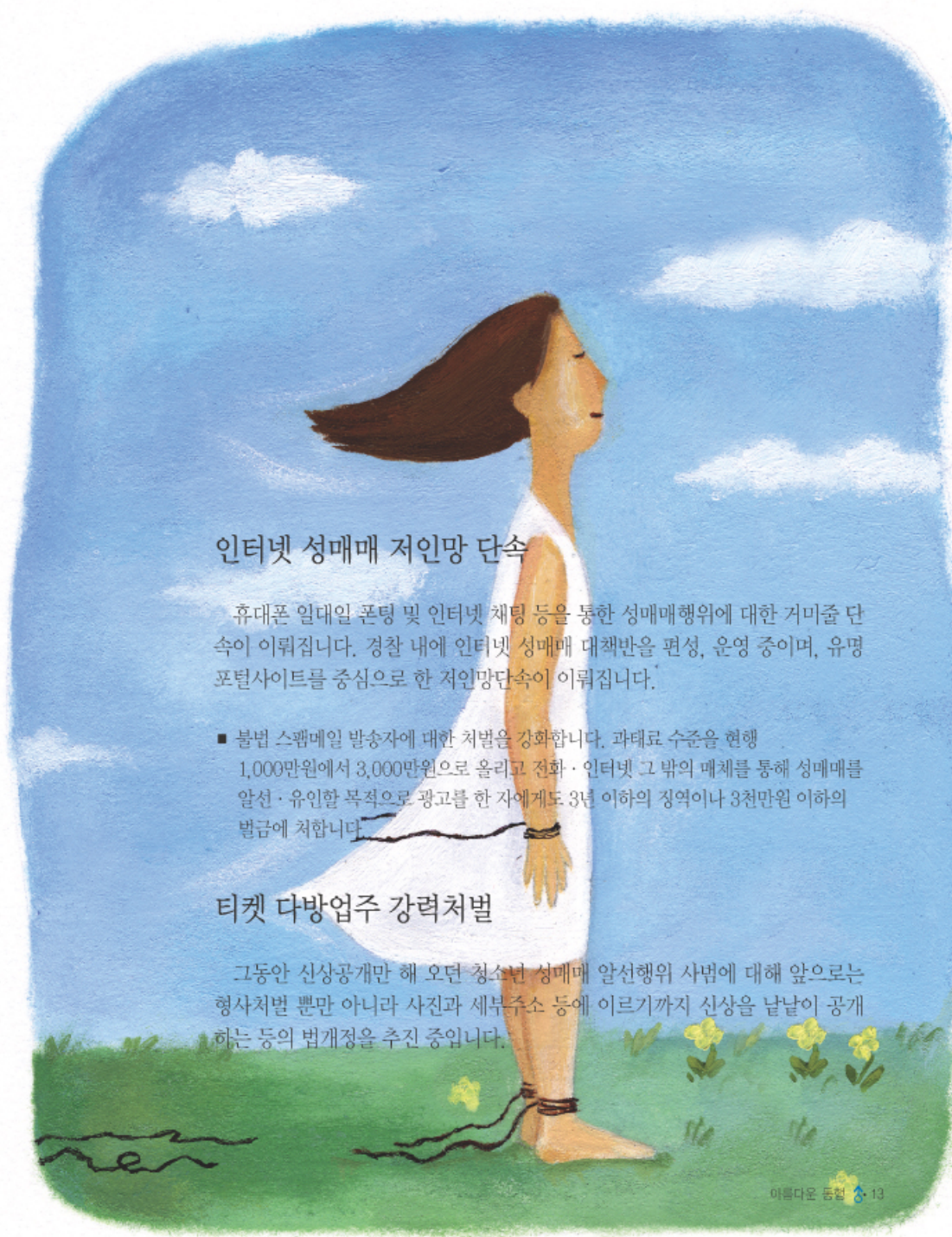
인터넷 성매매 저인망 단속

휴대폰 일대일 폰팅 및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성매매행위에 대한 거미줄 단속이 이뤄집니다. 경찰 내에 인터넷 성매매 대책반을 편성, 운영 중이며, 유명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저인망단속이 이뤄집니다.

-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유인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티켓 다방업주 강력처벌

그동안 신상공개만 해 오던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 사범에 대해 앞으로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사진과 세부주소 등에 이르기까지 신상을 낱알이 공개하는 등의 범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4 피해 청소년 “새 희망이 보여요”

지금까지 성매매 대상 청소년은 경찰의 단속 이후 적절한 사후처리 없이 혼방조치 됨으로써 성매매로 재유입 되는 등의 문제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구출된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일정기간 긴급 생계보호 및 법적지원과 의료혜택, 직업훈련기회까지 제공해 나갑니다.

교육과정 확대 등 자립 기반 세우

가출청소년 거리상담활동(out-reach)을 통해 법률상담, 피해 청소년 법적구제를 위한 소송수행, 상담 메뉴얼 발간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갑니다. 또한 필요시 고교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장기보호를 해주는 한편 이들의 자립을 위해 기술 및 취업교육도 병행하게 됩니다.



5 길거리 음란 유해 광고 싹쓸이 처벌

폰팅, 출장마사지, 음란성 전화광고 등 처벌대상

최근 전화를 이용한 교재 알선업이 음란 성매매 사업으로 변질되는데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음란성 광고물, 즉 성매매를 알선, 암시하는 내용의 전화번호 광고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집니다.

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게재 광고도 감시 처벌

정부는 이들 광고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단정, 그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실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 유해광고 감시단 뜬다

또한 유흥업소 주변이나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각종 유해광고물이거나 신문, 잡지, 인터넷사이트 등에 실리는 음란성 광고물들에 대한 감시, 고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가동되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열아홉의 일기

2월 17일, 흐림(겨울비)

그동안 돈 좀 모았어?
쓴 웃음이 나온다, 몸통이 하나 제대로 남아 있음
다행이게?

거긴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니야, 일단 그 집에 들어
가는 날부터 빛을 지게 돼 있어,
연일 계속되는 감금, 진이와 함께 다른 방도를
찾아보려고 도망가다 전주에서 붙잡힌 이후 20일
째 문밖을 나가지도 못한 채 손님을 받고 있다,
선후염으로 목이 통통 부어올라 이제 말도 할 수
조차 없다... 생리로 숨을 쉰고 일을 해야 한다...

XX의 세상,

내 보증인은 소개소 삼촌이다, 빛 있는 애들은
서로 동시에 보증을 세웠다, 도망가면 대신 갚기
로 하고... 도망갈 엄두가 안 나지만 몸이 아파 자주
쉬는 날이 많아서 빛은 벌써 700만원이 더 늘었
다, 이 방안에 모든 것들이 다 빛이다, 방세, 가구,
옷, 심지어 수돗물 쓰는 것까지... 빛에 묶여 완전히
메인 몸이니 삼촌이 매일 따라 다닌다,

첫 달에는 무조건 1할 이자를 받았고, 둘째 달부
터는 5부, 콤비(식사비, 물품비)라고 해서 한달에
백삼십만 원씩 더 떼인다,

그동안 석 달 넘게 일해 내가 번 돈은 3천만 원이
넘었는데 수입에서 5:5 말로만 계산했지 받은
게 하나도 없다, 병든 아빠, 식당일 하는 엄마...

젊은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나선지 석 달...
이제는 또 어디로 팔려 가는 걸까...

오늘도 하늘이 새까맣다,

- 어느 탈성매매 소녀의 일기 -

아리송한~

성매매 관련답이행

인식
법, 법적용
처벌기준
정책



Q 성매매 알선업자 등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돈과 재산도 몰수 한다는데?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벌어들인
금품과 재산은 법원이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행위 또한 범죄로 취급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 등 성범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반대로 성매매가 성하면 성범죄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사례에 비춰 보면 성매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나라에서 보다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에서 오히려 성범죄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한다거나 대다수 여성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믿음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모른 채 갖게 되는 막연한 환상일 뿐입니다.



인간의 성욕구는 생물학적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왜 성매매를 금지하려 하나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건 아닐까요?

성매매가 인간의 본능과 사회제도와와의 관계에서 '필요악'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인격을 유린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원시적 남성우월주의 시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요. 성매매 행위 자체가 돈에 의해 지배와 피지배적 관계로 성립될 수밖에 없고, 또한 여성의 인격적 종속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 인권침해는 물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남녀불평등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성매매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 행해져 왔다 하여도 인권침해, 강요, 억압, 폭력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성매매 시장구조에서 국가는 개인의 인권보호와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이를 법률로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문제가 정부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접근만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오랫동안 독버섯처럼 번창해 온 성산업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져 온 성매매 문제가 정부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접근만으로 하루 아침에 해결되기란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각자가 성매매야말로 가장 야만적이고, 비인도적 범죄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과 실천의지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민간단체, 학계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인 국민의식전환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공창제를 도입, 성매매를 허용하고 직업여성으로서 정당한 사회, 경제적 대우를 받도록 하는 등의 대안은 없나요?

성매매가 인류역사와 함께 늘 존재해 왔으며, 사회적 필요악이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시키자는 주장은 여성의 인격과 성 상품화를 공인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법 이전에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 가치관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또 남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사회적 관용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성을 파는 여성 스스로도 정당한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택한 직업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양성평등을 거론하면서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여성중심의 편향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가요?

성매매 문제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중심으로 한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가치관은 남성, 결혼과 가족생활, 나아가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장래와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성매매방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전체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의 성문화, 군문화를 비롯한 억압적 조직문화, 가부장적 남성중심문화, 선정적 매체의 생산과 유통 등 성매매를 야기해온 모든 사회적 병폐와 관습에 대한 비판과 겸허한 반성이

- 함께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성매매 여성을 성산업의 피해자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데 돈을 벌기 위해 힘든 노동을 외면하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도 많지 않나요?

물론 충분한 개연성은 있다고 인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성매매종사 여성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가정폭력, 가난, 강간 등으로 가정을 떠나거나 사회로부터 소외돼 어쩔 수 없이 성매매 현장에 뛰어들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를 자발적 선택으로 보아 넘기기에 무리가 있지요. 또한 대부분의 종사여성들은 살아갈 방도만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으며, 이미 한번 발을 들여놓은 여성은 자유롭게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성매매 시장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 또한 성매매 여성들이 아닌 자본가와

- 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성매매를 금지한 나라가 있나요? 성매매를 금지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나요?

스웨덴,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 태국, 미국의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이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도 초기에는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우선시 했지만, 지금은 판매자,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거나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들 국가가 취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입장도 성산업이 팽배한 사회에서 모색되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 즉,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과 여성의 인권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척결해 나가기 위한 공공의 목표를 확고히 세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소개소는 악질이다

소개소가 악질이다.
소개소 삼촌들이 아가씨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일명 탕치기라고 한다) 빚을 올리고, 유흥으로 단란으로 다니다가 결국 빚 때문에 3중으로, 섬으로 넘긴다.
소개소는 끝발이 짱이다. 뒤에 경찰 다치고 한다면 고발해도 소용없다고 한다.
소개소로 아가씨가 들어오면 일부러 창녀촌으로 집어 넣는다. 3달 계약으로 들어가 한달 후에 나오게 하고 몸값(빚)을 올려 다른곳으로 보내 일시키고 하면서 지네들 배를 불린다. 삼촌 말로는 어떤 애들은 선불금도 없고 가게에서 일 하고 새벽에 보도를 뛰면서 돈을 번댄다.
하지만 실상 내 주변에는 빚갚고 나가는 애들은 없다. 말 들어보면 옛날에 빚을 한번 갚다고 하는데 자기가 벌어서 나가는 경우는 없는데…….





성매매방지관련법 제정의 취지와 의미는?

여성들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무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에 성매매에 노출된 여성들은 성매매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한 채 발을 들여 놓기 일쑤이며, 그곳의 실상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선불금 이자와 각종 벌금·결근비 등을 갚기 위해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당하고 구타·감금·감시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한 업소로 넘겨지는 인신매매도 이루어집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을 도입해 이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인적사항 비공개 심리 등 다양한 법적 보호조치를 확대했습니다.

반면, 성매매 알선·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했고, 관련 직업소개나 광고까지 강력히 처벌토록 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착취구조에 대한 사법적 접근과 규제가 용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2000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여성과 아동의 성매매예방을 위한 의정서」에 발맞춰 국제적 인권보호기준을 대폭 반영한 국제수준의 입법으로 평가될

● 만합니다.



그동안 있어 온 윤락행위방지법의 「윤락」과 「성매매」는 용어상 어떤 개념 차이가 있나요?

그동안 통용돼 오던 「윤락」이라는 용어는 성을 파는 여성의 타락한 행위에 국한된 의미로 사용돼 왔지만 이번 법제정으로 성을 팔고 사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의 성매매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산상의 이익, 또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성을 알선·구매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돼 성매매와 관련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성을 판 여성이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여성에 대한 도덕적 낙인을 전제로 해 온 「윤락」또는 「매매춘」등의 용어가

● 갖는 선입견도 크게 불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매매방지법은 단순히 성매매 종사여성이나
술집 종업원 등과 대가를 지불하고 성행위를 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률은 단순 성매매자 또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나 동기·행위자의 성품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처분 기간도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무조건 죄를 묻기 보다는 교정과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피해자 개념이 있을 수 있나요?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알선에 의해 성
매매를 하게 된 청소년이나 심신장애자 그리고 마약류 중독 또는 인신매매에
의해 성을 착취당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개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성을 파는 자를 사실상
처벌치 않게 돼 처벌주의를 무용화 할 소지가 있는 만큼 형법상
강요된 행위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불금 등을 받고 빚을 지고 있는 성매매 종사여성도
피해자에 해당하나요?

선불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와 위계나 강압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면 피해자로 규정되
니다. 설사 이 같은 행위가 개인간의 약정이나 계약에 의해 이뤄졌다 해도
사회공공질서에 반하므로 그 약정은 무효이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한
경우도 그 효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지요.
만약, 성매매 여성이 현재 이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했거나 인격적으로 강압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는데 선불금 때문에?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
매매를 한 사람들이 성을 파는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이유를 불문하고 전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소위 포주와 성매매 여성 사이에 오간 선불금 등은 성매매라는 불법원
인으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되며, 이와 관련된 고소
고발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선불금을 고리로 성매매로 유인해
강요와 감금 등을 통해 이탈을 못하게 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칫 성매매와 무관하게 빌려 쓴 돈도 무효화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성매매알선처벌법은 채권무효규정에 대한 적용범위를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해 놓았기는 하지만 이는 민사법과의 저촉을 피해 성매매를 위한 고용·모집·취업소개·인신매매 관련 채권으로 그 한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사범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된다면 신고자에 대한 안전과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나요?

법원은 성매매 신고자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본인 및 가족들의 신변보호를 최우선시하며 원할 경우 증인신문 등 심리과정의 비공개·신문방식과 장소 선택까지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도 자수나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면하고 이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의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나 신고자의 조사 시 별도 조사실을 운영하고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 사건의 신고, 고소, 고발 등으로 수사 중에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불기소처분 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는 강제퇴거 명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검사는 외국인 여성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피해실태, 증언, 배상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일정한 기간 퇴거 명령의 집행을 미루거나 보호를 일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조사 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통역지원, 법률지원 등 국내 피해여성과 동등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의 알선과 강요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 소개행위 등을 통해 영업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성을 파는 대상을 모집 또는 직업으로 소개한 자 등을 말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위계 등에 의한 방법으로 성을 팔게 하거나 친족이나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호 감독한다는 이유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촬영행위 등도 포함되며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포주나 성매매를 직업으로 소개한 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 될 수 있겠지요.



흔히 길거리 등에서 보게 되는 낮 뜨거운 성매매 소개, 알선 유인물 배포행위도 처벌 대상인가요?

물론입니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각종 간행물·유인물·광고물 제작·유포행위 뿐만 아니라 전화나 인터넷을 비롯한 기타 매체를 통한 유사행위 등이 모두 성매매 알선과 직업소개 및 광고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포츠신문 등에 게재되는 음란성 광고 등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겠지요.



성매매 알선업자 등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돈과 재산도 몰수 한단데?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벌어들인 금품과 재산은 법원이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행위 또한 범죄로 취급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을 없앤다고 과연 그게 없어질까요?

일정한 지역에 모여서 성매매만 영업으로 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경찰에서 성매매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국민들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만 확산된다면 반드시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시에 없애기가

어렵다고 보아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폐쇄는 언제부터 이뤄지며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업소 폐쇄는 2007년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05년에 특별법을 만들면 2007년 법 시행이전에 유예기간을 주어 전업을 유도할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은 지금으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특별법을 시행하고 국민들의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잡히면 얼마 안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폐쇄 방침과 관련, 성매매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방안은?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나 앞으로 시행될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에서도 성매매 알선은 불법이므로 불법영업소의 폐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폐쇄조치가 단행되면 수많은 성매매 종사여성들의 생계대책 등 단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빚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법률지원이 이루어지고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그리고 피해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해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을 국가가 나서서 도울 계획입니다.

특히 훈련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경비나 거주를 위한 그룹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고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복권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성매매 관련 업종이 다양화되는 등
성산업이 사회전반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서비스산업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성산업으로 퍼져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티켓다방이나 유흥주점은 물론이고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 본래 업종은 뒷전이고 검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 알선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으로도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력이 닿는 대로 모든 형태의 성매매 알선을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업소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증언으로 그 실태와 수법이 날날이 밝혀지고 있어 단속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등 단속공무원의 유착이
늘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성매매방지 대책의 성패가 유착비리 근절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당연시 해왔기 때문에 경찰이나 공무원도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문화를 비판없이 수용함으로써 성매매 업소에 대해 눈감아 주거나 심지어 성상납을 받은 사례까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비리 경찰이나 공무원이 발각되면 징계나 파면 등의 인사조치 등 엄중하게 문책할 것입니다.



**성매매 사범 신고와 피해여성의 상담 등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전화나 창구는?**

긴급을 요하거나 피해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청 「성매매여성 긴급지원센터 (02)723-0183」 또는 「183」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인 성매매반, 인터넷 및 청소년 성매매반, 외국인 성매매반 등 3개 반이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신고나 시민제보 등이 접수되면 경찰 여경기동수사반에 통보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신고안내 및 구조지원서비스 체계가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신고나 상담은 어떤 창구를 이용해도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여성을 위한 통역서비스, 피해여성들의 의료, 법률, 생활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은밀한 성매매도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인터넷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어 경찰에서는 인터넷 성매매 대책반을 구성하여 범죄단속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흔히들 인터넷 성매매는 1:1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적발된 사건을 통해서 소위 포주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알선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마 비용이 적게 들고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점에서 인터넷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터넷은 IP 주소 등을 역추적할 수 있어 수사경험이 축적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티켓다방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전국 다방업소 중 50.4%가 티켓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75%의 업소에서 35,000여명의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티켓다방이 청소년 성매매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경찰, 지자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동점검단을 가동해 1개 지역 씩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한번 단속반이 가동됐다 하면 티켓다방이 발을 붙이지 못할 때까지 '웅고집단속'이 계속될 것이며 여기서 적발된 티켓다방 업주와 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얼굴과 신상정보까지 낱알이 공개해 사회적인 지탄을 면치 못하도록 유도해 나갈 각오입니다.



성매매 근절이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국민적인 호응과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은 있나요?

지구상 어느 나라도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성매매가 만연되고 일상화 된 곳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국민의 의식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군장병과 경찰,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해 많은 호응과 동참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성문화는 음주 및 접대문화, 군문화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최근 국제청이 접대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유흥 주점 등에서 호화접대가 상당 폭 줄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변화로 보입니다. 성매매로 연결되는 퇴폐성 접대문화가 바뀌는 것부터 작은 시작이라고 보여 집니다. 성매매방지대책 시행으로 기업에서 공연관련 제공 등 건전한 기업 접대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휴가나 외박 시 사전교육을 강화해 성매매 예방에 군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나! 나 좀 도와주세요”
“남자! 남자! 남자가 싫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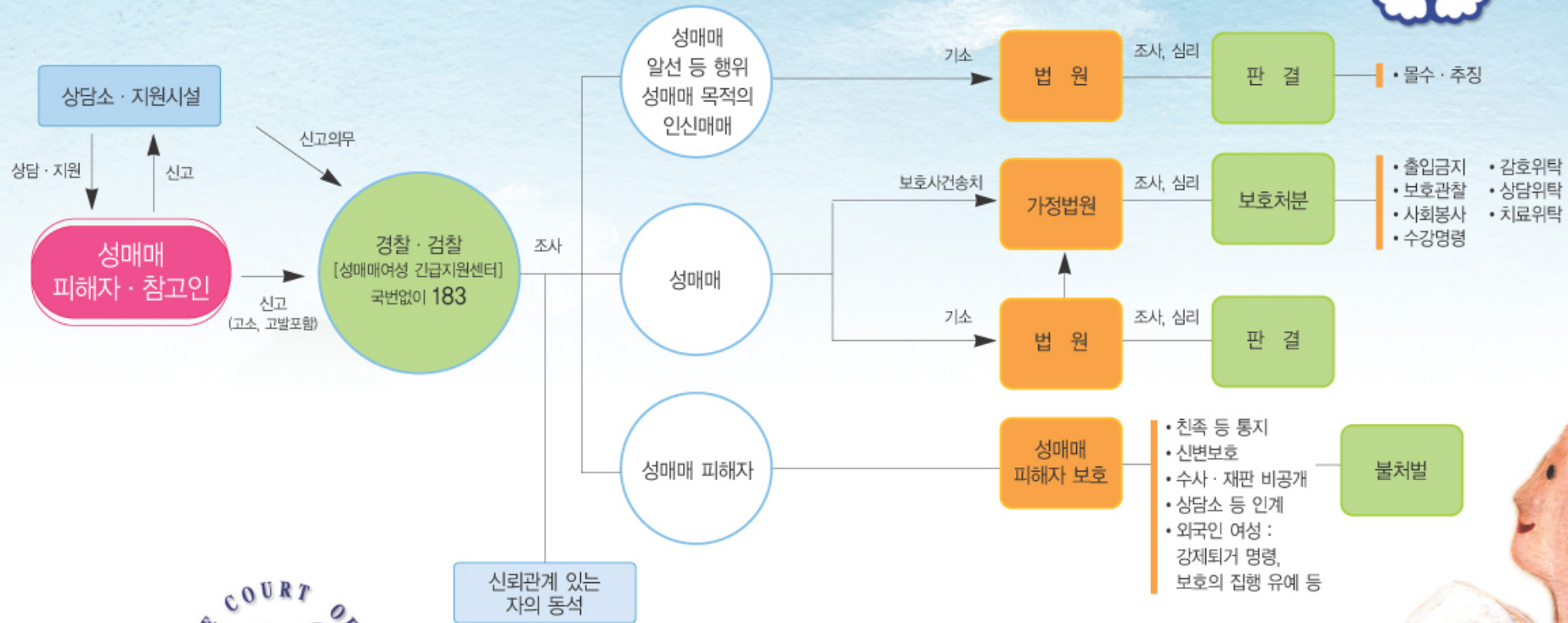
2000. 6. 29.

오늘 하루가 왜 이리 긴지 모르겠다. 너무 너무 우울한 하루다.
멀리서 들려오는 지겨운 벨고동소리, 이곳에 온지 오늘로 두달째,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정말 집에 가고 싶다. 눈물이 마구 흐른다.
겨우 겨우 잠고 울음을 삼켰다.
거울속에 나를 들여다 본다. 형편없이 보인다.
항상 거울을 보며 묻는다. 너 지금 여기 왜 있니?
빨리 집으로 가야지...
잠들기가 싫다. 눈뜨기도 싫다. 말하기는 더 싫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하느님, 저에게 단 한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성실하게 옛 일들을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젠 지쳐가고 있어요.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이진 아닙니다.
이러다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새로이 새롭게 살겠습니다.

-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희생자 임00 양의 일기 -



성매매사건 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이 위급할 땐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번을 누르세요.

■ 현장상담센터(성매매 피해상담소)

지 역	상 담 소 명	전 화 번 호
서울	다시 함께 센터	02-814-3660
	성매매피해자 위기지원센터	02-942-8297
	쏘나의 집	02-474-0746
경기	새움터	031-663-4655
부산	살림	051-257-8297
	해솔	051-743-1368
전북	전북성매매여성 현장상담 센터	063-232-8297
경북	새날	054-231-8297

■ 자활지원센터

지 역	센 터 명	전 화 번 호
서울	막달레나의 집	02-790-6387
경기	새움터	031-867-4655

■ 외국인 쉼터

지 역	쉼 터 명	전 화 번 호
서울	벗들의 집	02-458-2601
경기	안양 진진상복지관	031-466-2876

■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지 역	시 설 명	전 화 번 호
서울	은성직업기술원	02-843-3872
	한국여성의 집	02-333-7511
	씨튼해바라기의 집	02-747-1260
	나자렛쉼자리	02-826-3274
	성심어머니의 집	02-691-4365

지 역	시 설 명	전 화 번 호	
서울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02-867-9682	
	우리들 쉼자리	02-765-0635	
	평화의 샘	02-825-1274	
	유프라시아의 집	02-684-4438	
	다시 함께 쉼터	02-831-6294	
	어울림터	02-917-2502	
	휴먼케어 센터	02-953-7942	
부산	나사렛성가정 공동체	02-391-3086	
	웨슬리마을 신나는 디딤터	051-253-0270	
	구세군신애관	051-623-3254	
대구	해뜨는 집	051-257-9056	
	가톨릭여자기술원	053-764-8537	
대전	수지의 집	053-741-3122	
	대전여성직업보도원	042-585-1141	
울산	우리청소년쉼자리	042-226-6300	
	성심새롬터	052-268-3374	
경기	성심새롬터	052-268-3374	
	모퉁이쉼터	032-343-1880	
강원	새움터	031-666-5878	
	루치아쉼터	033-735-1320	
충남	선혜원	033-642-3555	
	충남여성직업보도원	041-852-1172	
전북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민들레	063-285-8297	
경북	전남	여수사랑의 집	061-651-9490
	희망의 샘 쉼자리	054-857-6137	
경남	우리들 쉼터	054-638-9574	
	창원여성의 집	055-298-8363	
	로댐의 집	055-292-4747	
	해바라기 쉼자리	055-252-7666	
제주	젊음쉼자리	055-296-7241	
	제주어민회부설 제주성매매피해 여성지원쉼터	064-711-9119	

아름다운 동행

발행처	여성부
발행부서	여성부 권익기획과 (Tel. 02)3703-2602~3)
발행일	2004. 6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기획, 디자인	(주)다윈엠피알 (Tel. 02)722-2889) http://www.dawinmpr.com



여성부
www.moge.go.kr